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마이데이터 요청” 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 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접수-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마이데이터 요청 메뉴” 에서 마이데이터 소득 정보 연계를 [요청]하고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 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 직접 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 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 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209,56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4,571,021	5,108,996	5,646,971	6,184,946	6,722,921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 A. 미혼여성
-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같은 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